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사유

-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 15680호, '98.2.24)으로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조례중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6조 제1항 중 “국내여비”를 “여비”로 하고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여비”로 한다.
- 제8조 제1항 중 “국내여비”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1야당 “19,500 원”을 “2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 제8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한다.

■ 검토의견

- 지방의원의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조례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이며, 동조례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그 동안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었습니다. 그

러나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행단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의 경우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적법타당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단순한 자구수정 내지 여행단가의 조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680호, '98.2.24)
-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